

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	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보도	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	배포	2017.7.4(화)
책임자	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김진홍(02-2100-2950)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손영채(02-2100-1730)	담당자	이수암 사무관 (02-2100-2676) 김지웅 사무관 (02-2100-1725)	

제 목 : 소액해외송금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

- 정부는 자금세탁방지 의무, 실명확인절차 등 안내 예정

1. 설명회 개요

-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'17.7.18일부터 도입·시행되는 소액해외 송금업과 관련,
 - 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실명법 등에 대한 업권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
 - 금융위, 금융정보분석원, 금감원 관계자가 참석하여 **제도의 주요 내용, 송금업자의 고객확인·실명확인방법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**
 - ① 특정금융정보법 상 고객확인 의무·의심거래보고 의무 등
 - ② 금융실명법 상 실명확인 방법 등
- ※ 제도 변경 내용을 반영한 외국환거래법령, 특정금융정보법령 및 금융실명법 시행령은 '17.6.27일 공포되어 '17.7.18일 시행 예정

2. 특정금융정보법 상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주요 의무

- (고객확인)** 고객의 신원 (실지명의, 주소, 연락처) 및 실제소유자*, 금융거래 목적, 자금원천 등을 확인 (법 제5조의2)
- * 고객을 실제로 지배·통제하는 자연인

- (의심거래보고)** 고객의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조달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 (법 제4조)
- (전신송금 시 정보제공)** 100만원 (또는 미화 1천달러)을 초과하는 전신송금 시 송금인·수취인의 성명·계좌번호 등을 송금받는 금융회사에 제공할 의무 (금융회사 간 정보공유, 법 제5조의3)

3. 금융실명법 상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실명확인 절차

- 금융회사간 정보공유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
 - 기존 금융회사와 같이 추가 송금 시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소액해외송금업자 간 송금정보 공유 필요
 - * 송·수취 금융회사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송금의뢰인과 실제 자금이체자의 일치 여부 확인 가능
 - 소액해외송금업자가 특금법 상 '금융회사'에 포함됨에 따라 他 금융회사와 송금정보 공유가 가능 (법 제5조의3)
 - * 他 금융회사와 정보공유를 하기 위한 별도 계약 필요 (전용망 설치 등)
- ⇒ 이를 통해 송금업자는 매 송금시 실명확인을 반복할 필요없이 **최초 거래시** 실명확인절차를 이행하고, **추가 송금시**에는 금융회사간 공유된 송금정보를 활용해 실명확인 생략 가능

<소액해외송금업자의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 방안>

➔ **(최초 거래)**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처음 금융거래를 개시할 때 거래상대방 (송금의뢰인)에 대한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필요

(추가 송금) 추가 송금실행 前 ①계약상 송금의뢰인, ②당해 자금이체자의 **실명·계좌번호를 확인·대조**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인 실명확인 생략 허용